

# 심리서비스 법제화 안내

## <심리서비스법위원회>

### FAQ 중심

2021년 5월 1일

Q1

“심리학 핵심역량을 갖춘 심리학 전공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1안 7조)

제7조(심리사 면허) ① 심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받아야 한다.

1. 심리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실무수련을 이수한 사람. 실무수련 기간 및 기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실무수련을 이수한 사람. 실무수련기간 및 기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하고 외국의 심리사 면허를 가진 사람

## 제 12조 (전문성)

1. 심리학자는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는 심리학자는 전문분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추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3. 평가와 심리치료에 종사하는 심리학자는 교육, 훈련, 수련, 지도감독을 받고, 연구 및 전문적 경험을 쌓은 전문적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비상상황인데 의뢰할 수 있는 심리학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심리학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심리학자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순간 종료하여야 한다.
4. 자신의 전문 영역 밖의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심리학자는 이와 관련된 교육과 수련 및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 International Declaration on Core Competences in Professional Psychology

Adopted b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Psychology (IAAP) 15. June 2016

International Union of Psychological Science (IUPsyS) 25. July 2016

**Competence:** A combination of practical and theoretical *knowledge*, cognitive *skills*, *behaviour*, and values used to perform a specific behaviour or set of behaviours to a standard, in professional practice settings associated with a professional role. In some regions of the world, the term competency (pl. competencies) is used with the same meaning as the term competence (pl. competences).

**Competences:** Clusters of knowledge, skills, abilities, and other attributes that enable a person to act effectively and to a defined standard in a professional practice situation.

PSYCHOLOGICAL  
KNOWLEDGE AND SKILLS  
UNDERPINNING THE CORE  
COMPETENCES

DESCRIPTIONS

---

**KN** Possesses the necessary  
knowledge

KN1 Has the necessary foundational knowledge of psychological concepts, constructs, theories, methods, practice, and research methodology to support competence

KN2 Has the necessary specialised knowledge of psychological concepts, constructs, theory, methods, practice, and research methodology relating to own areas to support competence

---

**SK** Possesses the necessary  
skills

SK1 Has the necessary basic skills to support competence in psychological practice

SK2 Has the necessary specialised skills to operate in own areas of psychological practice to support competence

PROFESSIONAL  
BEHAVIOUR COMPETENCES

DESCRIPTIONS

---

**PE Practices ethically**

- PE1 Applies relevant ethics codes in one's professional practice and conduct
- PE2 Adheres to relevant laws and rules in one's professional practice and conduct
- PE3 Resolves ethical dilemmas in one's professional practice using an appropriate approach

---

**PA Conducts psychological  
assessments and  
evaluations**

- PA1 Identifies assessment or evaluation needs in individuals, groups, communities, organizations, systems, or society
- PA2 Selects, designs, or develops assessments or evaluations, using methods appropriate for the goals and purposes of the activity
- PA3 Delivers assessments or evaluations, including administration, scoring, interpretation, feedback, and reporting of results

---

**PI**      **Conducts psychological interventions**

- PI1      Plans and carries out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individuals, groups, communities, organizations, systems, or society
- PI2      Designs, develops, and evaluates the potential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of psychological interventions, using methods appropriate for the goals and purposes of the intervention
- PI3      Integrates assessment and other information with psychological knowledge to guide and develop psychological interventions
- PI4      Evaluates the usefulness and effectiveness of one's own interventions
- PI5      Uses evaluation results to review and revise interventions as necessary
- PI6      Provides guidance and advice to other relevant parties involved in the psychological intervention

Q1

## “심리학 핵심역량을 갖춘 심리학 전공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1안 7조)

- 심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심리학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 in professional psychology, International Project on Competence in Psychology)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국은 박사기준; 유럽은 학석사 기준).
- 핵심 역량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커리큘럼 상에서 다양한 영역에 대한 학업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법안에 따르면 ‘심리학 전공자’란 커리큘럼 상에서 심리학의 각 세부영역 과목을 수강한 사람들로 정의됩니다.
- 심리학 핵심역량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자로 ‘심리학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대학원에서도 선수 과목 등으로 충족 가능합니다.
- 세부 조항과 규정은 심리서비스법 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일안 마련과 함께 세부 시행세칙 제정 시 정립될 예정입니다. 법 제정 절차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세칙은 모법이 통과된 이후에 세부적으로 포함되게 될 내용입니다.



Q2

“자격요건이 ‘학부+석사 또는 석사+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석사 과정만 이수하고 수련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심리사 취득이 불가능한가요?”

- 심리사라는 전문자격의 취득을 위해서는 적어도 약 4-5년 정도의 심리학 핵심 역량 과목을 이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기본 입장입니다.
- 현재로서는 석사 과정에서 핵심 과목만 이수한 사람들은 대학원 과정에서의 학부 선수 과목 이수, 혹은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 취득 등의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들은 추후 자격심의회 등의 승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 학부와 대학원에서 심리학 핵심역량을 수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따른 것이며, 현재 시행되는 민간자격 기준을 볼 때에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대학원 진학 시, 혹은 수련 기관 지원 시 고려되는 기준으로 현재 민간자격 취득 기준을 상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 Q3

## “심리서비스법이 제정되면 민간자격증인 기존 학회 발행 자격증은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본 법1안의 제16조 제1항 위반행위 취지는 ‘민간자격’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16조1항에 대한 ‘별칙 규정’을 이전 초안에서 삭제하여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 종전 법률 초안에서는 “심리사”와 동일한 명칭,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조항을 포함 했었으나, 문제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법률 1안에서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나온 이후에도 심리학회 민간 자격 (예: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등)은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 단, 법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심리사’를 영리목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심리사’ 명칭은 추후 단일안 논의 시, ‘국가심리사’ ‘인증심리사’ 등과 같이 용어를 수정하여 이러한 논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후 논의사항).
- 개업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법1안에 명시된 ‘심리사’를 표방하면서 개업하는 것은 불가함 (예, 변호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변호사 자격을 지닌 것을 표방하여 변호할 수 없는 것과 유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심리학회 분과 학회 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자문을 받고 지속적으로 서로의 민간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용어로 확정해야 할 것임.

Q4

“기존 학회 1급 자격(예: 상담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전문가) 취득자도 자격요건(심리학 전공 등)에 해당  
되어야만 심리사를 취득할 수 있나요?”

- 경과조치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추후 심리서비스법 위원회를 중심으로 핵심역량,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세부 조항과 규정들이 정립될 것입니다. 다만 한국심리학회의 심리서비스 최고 자격 소지자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예상합니다.
- 경과조치 기간 중 1급 취득 예정에 있는 2급 또한 심리사 또한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이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모법 안에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새 모법 안이 발의된 후 대통령령(시행령,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법안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Q5

“법제화된 이후에는 대학원생들, 2급 수련생, 1급 수련생들의 심리서비스 활동에 대한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심리서비스법 위원회에서 수련생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예: 수련기간 중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임시자격부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될 것이고, 단일안 구성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심리서비스법 위원회에 제안되었습니다.

Q6

“심리서비스법은 1급 자격을 위한 법이고, 2급 자격은 배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맞는지요?”

- 심리서비스법은 일정 수학 기간과 실무 수련기간을 거쳐야하는 1급에 준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상정하는 법안입니다. 2급 자격자의 경우, 지속적인 수련으로 민간자격 1급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심리사 취득 또한 가능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Q7

“심리서비스법이 시행되면 심리사 자격이 없는 상담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전문가의 상담은 불법

이 되고 개업도 불가능한가요? 심리상담은 심리사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기존 학회 발행 자격증은 ‘민간자격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고, 심리서비스법 1안 제12조에 명시된 심리사의 심리서비스는 배타성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의 민간자격증의 종류와 배출된 자격자를 고려할 때, 심리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활동을 배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 심리서비스법을 통해, 대한민국에 심리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심리사가 하는 심리상담과 타 전문분야가 하는 심리상담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여 심리사의 역할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전문심리사는 심리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 전문심리사는 심리사 자격 취득한 이후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춘 자로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는 미국의 ABPP(American Board of Professional Psychology)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심리사로 해당 분야 (예: 신경심리, 재활심리, 인지행동치료, 노인정신건강, 청소년 정신건강, 정신분석치료 등)에서 해당 기간 동안 실무 경험과 시험 등의 과정을 거친 경우, ABPP 자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임상심리전문가/상담심리사1급은 법1안의 ‘심리사’와 동등한 자격 요건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며 (예: 임상심리전문가/상담심리사1급 = 법1안의 ‘심리사’), 이 중 특정 기간 동안 실무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예: 지역사회 정신재활 영역에서 경력을 오래 쌓은 사람에게 전문심리사(정신재활)를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전문심리사를 위해 추가 수련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전문심리사 각 영역에 대한 전문분야 과목과 실무경력 기준 등의 요건은 추후 논의를 통해 구체화 될 것입니다.

Q9

## “한국심리사협회가 설립된다면 어떤 업무와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 한국심리사협회(가칭)는 심리사 직무의 개선 및 향상을 도모하고 개인과 조직,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심리사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업무 수행에 있어 보건복지부 및 (사)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리서비스 업무 및 심리사의 업무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자문에 따르면 모든 법에는 협회를 두는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법에 심리사협회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너무 많은 협회가 생겨 관련 타-직역 분야에서 겪는 혼란과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협회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모법이 만들어지고, 세부 시행세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한국심리학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진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Q10

## “자격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역할을 하나요?”

- 자격심의위원회는 심리사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심리학 전공 및 관련 과목에 대한 기준 및 심리사 국가시험, 수련 기관, 교육 기관 인증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 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은 심리학회 회원과 보건복지부 인력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ASPPB (Association of State and Provincial Psychology Boards)와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법률 1안에는 자격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심리학회에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 심리서비스법

- 심리서비스법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심리사의 정체성, 심리서비스의 모델을 점검하게 됩니다.
- 지난 50년간 심리학회의 정체성과 앞으로 50년간의 심리학회의 미래를 그려 봅니다.
- 무엇보다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가장 필요하고 타당한 법이 만들어지는데 심리학회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